

석유시장 개방에 따른 유통시장 전망과 품질관리방안 (상)

이 달 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팀 연구위원 〉

제장 서론

정부는 국내 석유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기본 목표하에 석유산업에 대한 자율화와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석유사업법」은 석유산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규제들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율화·개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된 「석유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석유정제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였다. 또한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매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석유수출입업 등록제로 변경하는 한편 석유수출입승인제를 폐지하였다. 석유판매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였고, 석유제품별·유통단계별 최고판매가격 고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가격을 자율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는 1997년부터는 정제(정제업 등록제는 1999년 시행), 수출입, 유통 및 가격부문의 주요 규제들이 대부분

폐지된다.

여기에 더하여 1999년부터는 석유정제업과 석유유통업(주유소운영업)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석유시장을 대외에 개방할 계획이다. 그동안 소비지정제를 원칙으로 정부의 규제와 보호속에 성장해 온 국내 석유산업이 대내적인 경쟁의 압력은 물론 국경없는 경쟁에 노출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석유산업을 둘러싼 이러한 커다란 환경변화는 향후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앞서 그로 인한 변화를 전망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시장개방에 따라 외국 기업의 국내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진입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시장개방은 가격과 수급 등 제품시장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시장개방은 석유유통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장개방으로 다양한 품질의 석유제품이 국내시장에 유입되었을 경우 품질관리에 문제는 없을 것인가? 본연구는 이와 같은 개방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분석, 개방 이후 석유유통시장의 모습을 조망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제 2장 석유제품 유통구조 현황과 시장 개방의 내용

제 1절 석유제품 유통구조

1. 석유제품 유통경로

각종 유통기관이 사회내에 있어 상호 연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전체 조직을 유통구조 (marketing structure) 라 하며, 이를 구성하는 유통기관들이 일련의 연결을 가지고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계열을 유통경로 (marketing channel)라 한다. 다시 말하면 유통경로란 최초의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제품이 이전하여 갈 때의 경로이며, 그 과정에 관련되는 中間商으로 구성된다.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제품의 특성이나 용도에 따라 목표시장이 달라지게 되므로써, 정유회사의 직접판매경로 (direct marketing channel)와 대리점·주유소 등의 중간 유통기관들이 개입하는 간접판매경로 (indirect marketing channel)로 대별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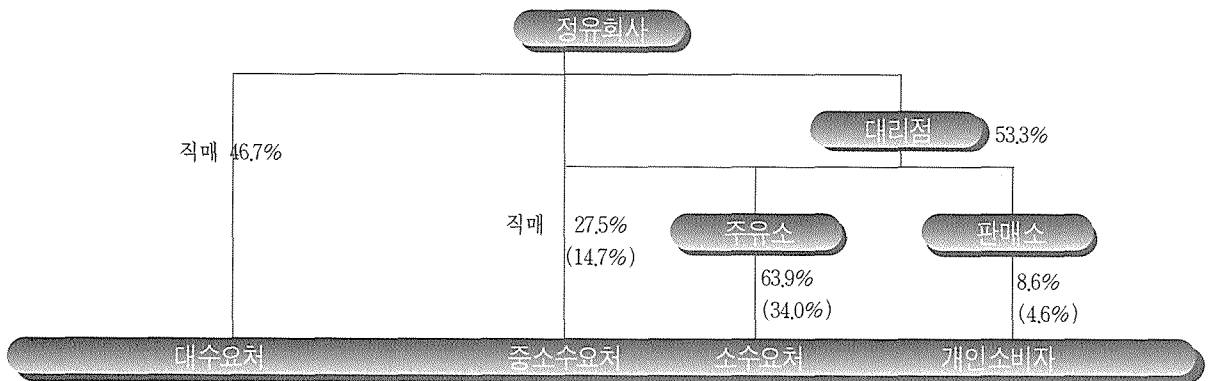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판매규모가 대규모이고 구매자가 지역적으로 집중해 있는 대수요처에는 정유회사가 직접 판매한

다. 정유회사 → 대리점 → 최종소비자로 연결되는 2단계 경로는 판매단위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구매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소제조업체나 중소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정유회사 → 대리점 → 주유소 (또는 판매소) → 최종소비자로 연결되는 3단계 경로는 판매단위가 소량이고 구매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활용하고 있다.

1995년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LPG를 제외한 정유회사들의 석유제품 공급량 (수출 및 병커링 제외)중 46.7%가 정유회사 직매형태로 공급되었으며, 나머지 53.5%가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되었다. 다시 대리점 이하의 유통과정에서는 대리점의 취급물량중 27.5%가 직매형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소매단계인 주유소와 판매소를 통해서 각각 63.9%와 8.6%가 공급되었다.

정유회사 → 대리점 → 주유소 (또는 판매소) → 최종소비자의 3단계 유통경로를 거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은 주로 경질제품인 휘발유·등유·경유이다. 특히 휘발유는 거의 전량이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등유도 휘발유와 같이 94%가 소매단계인 대리점을 경유하지만 소매단계에서는 상이한 유통경로를 보이고 있다. 즉, 도

〈그림 2-1〉 국내 석유제품 유통경로(1995년)



주 : LPG제외, ()의 수치는 전체물량중의 비율

매단계를 거친 등유는 주유소와 판매소에서 각각 75%, 22%가 판매되고 나머지 3%는 대리점이 직접 판매한다. 경유는 대수요처에 대한 정유회사 직매비율이 15%에 달하며, 정유회사 → 대리점 → 최종소비자의 2단계 경로를 거쳐 판매되는 물량도 전체 판매량의 10%에 해당한다.

B-C유 등 산업용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질제품의 유통 경로는 경질제품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정유회사의 대수요처에 대한 직매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대리점을 경유하는 물량은 전량을 대리점이 중수요처에 직접 판매하고 있다. 이와같이 중질제품의 직매비율이 경질제품보다 높은 것은 중질제품의 주요 시장이 산업단지여서 정유공장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더러 다량구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석유제품중 석유화학용 원료인 나프타와 항공기 연료인 제트유는 전량을 정유회사가 직접 판매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석유사업법」에서는 주유소로 하여금 차 상위 유통기관인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주유소가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유회사 → 대리점 → 주유소(또는 판매소) → 소비자로 이어지는 3단계 유통경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시행될 개정된 「석유사업법」에서는 제반 석유산업자율화 조치와 함께 석유제품 유통경로를 자율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만 정책변화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정책예고기간을 둔 후 1998년 1월 1일부터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로써 정유회사 또는 수입회사는 대리점을 경유하지 않고도 주유소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

2. 석유제품 유통기관

석유제품의 생산단계에는 SK(주)·LG칼텍스정유(주)·한화에너지(주)·쌍용정유(주)·현대정유(주)의 5

〈표 2-1〉 지역별·정유회사 계열별 대리점 및 영업소 수

	SK	LG	한화	쌍용	현대	합계
서울	13(2)	4(4)	4(0)	2(1)	2(1)	25(8)
인천	0(6)	1(1)	0(1)	0(1)	0(0)	1(9)
경기	1(4)	3(2)	0(1)	2(0)	1(0)	7(7)
강원	1(3)	0(2)	0(1)	0(2)	0(0)	1(8)
충북	1(1)	1(2)	0(1)	0(1)	0(0)	2(4)
대전	0(3)	2(1)	0(1)	0(2)	0(1)	2(7)
충남	0(2)	0(1)	0(1)	1(1)	1(0)	2(5)
전북	0(2)	3(1)	0(1)	0(1)	1(1)	4(6)
광주	1(2)	1(1)	0(1)	1(1)	0(1)	3(6)
전남	1(0)	0(1)	0(1)	0(2)	0(0)	1(4)
대구	1(3)	1(2)	0(1)	0(2)	0(1)	2(9)
경북	1(2)	0(1)	0(0)	0(0)	1(0)	2(3)
부산	3(1)	3(2)	1(1)	1(1)	0(4)	8(9)
경남	5(2)	2(2)	0(1)	0(1)	4(0)	11(6)
제주	1(0)	1(0)	0(0)	1(0)	0(0)	3(0)
전국	29(32)	22(23)	5(12)	8(16)	10(9)	74(91)

주 : 1996년 6월 기준, ()안의 수치는 영업소 수
 (자료) : 한국석유유통협회

〈표 2-2〉 정유회사 계열별 대리점 수 변화

연도별	SK	LG	한화	쌍용	현대	합계
1990	39	28	12	16	20	115
1991	39	28	12	16	20	115
1992	38	29	12	15	19	113
1993	38	29	12	15	19	113
1994	31	22	7	8	13	81
1995	29	22	6	8	11	76
1996	29	22	5	8	10	74

(자료) : 한국석유유통협회

개 정유사가 있다.

도매단계에 위치한 대리점은 직영대리점과 자영대리점으로 나뉘어진다. 직영대리점은 정유회사와 독립된 법인체나 정유회사가 자본참여와 경영참여를 통해 도매기능을 통합한 형태이다. 자영대리점은 자기자본과 책임하에 정유회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므로 직

〈표 2-3〉 지역별·주유소 수

	허가업소 수	영업소 수		
		합계	직영	자영
서울	846	765	253	512
부산	438	399	122	277
대구	468	388	76	312
인천	338	296	69	227
광주	223	194	40	154
대전	314	287	74	213
경기	2,021	1,374	213	1,161
강원	628	492	62	430
충북	592	492	45	447
충남	829	760	53	707
전북	822	637	126	511
전남	822	628	100	528
경북	1,059	801	62	739
경남	1,172	903	138	765
제주	143	112	9	103
전국	10,715	8,528	1,442	7,086

주 : 1996년 6월 기준
 〈자료〉 : (주)월간주유소, 『월간주유소』, 1996. 8.

〈표 2-4〉 지역군별·기간별 주유소 수 증가 (허가기준)

	주유소 수(개)				기간별 증가율(%)		
	91.6	93.6	95.6	96.6	91~93	93~95	95~96
서울	362	602	845	846	66.3	40.4	0.1
광역시	530	851	1,820	1,781	60.6	113.9	-2.1
기타	3,761	5,412	6,474	8,088	43.9	19.6	24.9
합계	4,653	6,865	9,139	10,715	47.5	33.1	17.2

〈자료〉 : (주)월간주유소, 『월간주유소』, 각월호

영대리점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성격 차이로, 직영대리점은 정유회사의 판매정책 수행에 목표를 두는 반면 자영대리점은 자사의 이윤추구에 목표를 둔다.

1996년 전국에서 활동중인 대리점 수는 74개이며, 각 대리점의 영업소 수는 91개이다. 1996년 6월기준으로 석유 대리점 중 정유회사 직영대리점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리점은 11개로 SK 5개, LG 2개, 한화 2개, 쌍용 1개, 그리고 현대가 1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994년 이후

국내 각 정유회사는 유통부문을 합리화한다는 측면에서 직영대리점을 중심으로 계열 대리점들을 합병하는 등 대리점 업체에 대한 재편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3년 113개이던 대리점 수가 1996년에는 74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소매단계에 위치한 주유소는 대리점이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와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로 구분된다. 직영주유소는 다시 정유회사 직영대리점 소유의 직영주유소와 자영대리점 소유의 직영주유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직영주유소는 대리점과 동일법인체이다.

1996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중인 주유소 수는 총 8,528개이다. 이중 17%에 해당하는 1,442개의 주유소가 대리점 직영주유소이며 나머지는 자영주유소이다. 한편, 한국석유유통협회에 의하면, 정유회사 직영대리점이 소유하고 있는 직영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0%를 약간 상회하는 900개 내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주유소간 거리제한이 점진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주유소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1년 11월에는 지역별로 설정되어 있던 주유소간 거리기준을 1/2로 축소하여 서울지역 350m, 광역시 및 시·읍지역 500m, 기타지역 1km로 각각 완화하였다. 또한 1993년 11월에는 서울시와 광역시에 대하여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였으며, 2년 후인 1995년 11월에는 시·읍지역과 기타지역에 대해서도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철폐하였다. <표 2-4>의 지역군별, 기간별 주유소 수 증가추이는 이와 같은 주유소간 거리제한의 단계적 완화 조치에 따른 영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 유통기관 유형별 판매량

가. 정유사별 판매량

석유제품 수출을 제외한 정유회사들의 국내시장 판매 실적이 <표 2-5>에 제시되어 있다. 내수시장규모는 1989년 287,146천배럴에서 1995년 677,210천배럴로

〈표 2-5〉 정유사별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추이

		SK	LG	한 화	쌍 응	현 대	기 타	합 계
판매량 (kt)	1989	120,484	94,935	23,985	21,533	17,746	8,463	287,146
	1991	153,478	119,652	34,628	53,782	30,127	33,000	424,666
	1993	184,841	142,225	58,302	58,301	32,091	88,815	564,575
	1995	218,139	172,363	67,119	84,609	43,373	91,607	677,210
연증가율(%)		10.40	10.45	18.71	25.62	16.06	48.73	15.37
점유율 (%)	1989	41.96	33.06	8.35	7.50	6.18	2.95	100.0
	1991	36.14	28.18	8.15	12.67	7.09	7.77	100.0
	1993	32.74	25.19	10.33	10.33	5.68	15.74	100.0
	1995	32.21	25.45	9.91	12.49	6.40	13.53	100.0

〈자료〉 : 한국석유개발공사, 「석유수급통계」, 1996. 3.

확대되어, 이 기간중 연평균 15.4%의 증가율을 보였다.

정유회사별 연평균 판매량 증가율은 SK와 LG칼텍스 정유가 연평균 10% 정도 증가하였으나, 한화에너지는 18.7%, 쌍용정유는 25.6%, 현대정유는 16.1%씩 증가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정제능력을 확대한 후발 정유회사들의 판매량이 크게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유 5사 이외에 LPG 수입회사인 유공가스와 LG칼텍스가스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대수요처인 한국전력과 석유화학회사가 직접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자체수요를 충당하는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유회사별 판매증가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시장점유율에서도 유공과 LG칼텍스정유의 점유율은 감소한 반

면 나머지 3개 정유회사의 점유율은 증가하였다. 즉, 유공과 LG칼텍스정유의 점유율 합계는 1989년의 75.0%에서 1995년에는 57.7%로 낮아졌으며, 한화에너지·쌍용정유·현대정유의 점유율 합계는 1989년 22.0%였던 것이 1995년에는 28.8%로 높아졌다. 유공가스·LG칼텍스가스·한국전력과 석유화학회사의 수입물량은 1995년 국내수요의 13.5%를 점유하고 있다.

나. 대리점 유형별 판매량

대리점의 석유제품 판매량은 국내 석유수요구조의 경질화 현상으로 대리점이 주로 취급하는 휘발유·등유·경유 등 경질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989~1995년 기간중 연평균 16.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리점 유형별로는 자영대리점의 판매증가율보다 직영 및 준직영대리점의 판매증가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정유회사가 직영 유통기관을 중심으로 마케팅전략을 구사하여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준직영대리점이란 명칭은 1981년 정부의 「3.14조정명령」에 의해 정유회사가 직영대리점을 취득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생긴 것이다. 부연하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자사의 판매전략을 보다 용이하게 구현시킬 수 있는 직영대리점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이에 각 정유회사는 기존의 자영

〈표 2-6〉 대리점 유형별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직영	준직영	자영	합계
판매량 (kt)	1989	6,788,862	4,183,802	7,837,529	18,810,193
	1991	9,467,667	8,664,370	10,186,255	28,318,292
	1993	12,474,790	15,177,293	9,984,575	37,636,658
	1995	23,017,643	13,930,108	10,324,915	47,272,666
연평균증가(%)		22.57	22.20	4.70	16.60
점유율 (%)	1989	36.09	22.24	41.67	100.00
	1991	33.43	30.60	35.97	100.00
	1993	33.15	40.32	26.53	100.00
	1995	48.69	29.47	21.84	100.00

〈자료〉 : 한국석유유통협회

대리점을 음성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직영화를 추진한 것이다.

「3.14조정명령」은 1991년 9월 1일로 해제되었고, 정유회사들은 최근 수년간 준직영대리점을 기존의 직영대리점에 급수·통합하였기 때문에 이제 준직영대리점이란 명칭은 사라졌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정유회사의 지배를 받는 직영 및 준직영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자영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은 1989년의 41.7%에서 1995년에는 21.8%로 하락하였다.

다. 주유소 유형별 판매량

〈표 2-7〉 주유소 유형별 판매량(1995년)¹⁾

(단위 : 배럴)

	직영주유소 ²⁾	자영주유소	합계
서울	11,920,457 (40.05)	17,844,379 (59.95)	29,764,836 (100.00)
부산	3,889,267	6,809,245	10,698,512
대구	2,691,656	7,254,941	9,946,597
인천	3,897,057	5,329,567	9,226,624
광주	1,415,864	3,002,275	4,418,139
대전	2,002,724	2,954,396	4,957,120
광역시	13,896,568 (35.41)	25,350,424 (64.59)	39,246,992 (100.00)
경기	11,311,901	27,655,877	38,967,778
강원	2,370,479	8,079,176	10,449,655
충북	2,357,759	7,357,340	9,715,099
충남	1,747,355	7,327,600	9,074,955
전북	2,006,568	7,629,152	9,635,720
전남	2,616,061	6,568,364	9,184,425
경북	2,840,979	13,486,582	16,327,561
경남	3,490,408	16,133,537	19,623,945
제주	194,243	1,845,641	2,039,884
기타	28,935,753 (23.15)	96,083,269 (76.85)	125,019,022 (100.00)
전국	54,752,778 (28.22)	139,278,072 (71.78)	194,030,850 (100.00)

주 : 1) ()안은 시장점유율

2) 정유회사 직영대리점 및 자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

〈자료〉 : 한국석유개발공사

〈표 2-8〉 지역별 주유소당 판매량 변화

(단위 : kl/월)

	1989	1991	1993	1995
서울	676	703	727	509
광역시	391	535	497	335
기타	232	277	273	272
전국	304	349	338	306

주 : 지역군별 주유소판매량을 당해년도 판매량 보고업체 수로 나눔.
〈자료〉 : 한국석유개발공사

〈표 2-9〉 직영과 자영의 주유소당 판매량 비교

(단위 : kl/월, %)

	1989			1995		
	직영(a)	자영(b)	b/a	직영(a)	자영(b)	b/a
서울	726	642	88.4	622	454	73.0
광역시	482	360	74.7	481	287	59.7
기타	373	210	56.3	455	243	53.4
전국	479	265	55.3	490	266	54.3

〈자료〉 : 한국석유개발공사

〈표 2-7〉은 1995년의 주유소 유형별 판매량을 각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전체 주유소 판매물량중 대리점이 소유한 직영주유소의 판매비율은 28.2%이며, 자영주유소의 판매비율은 71.8%이다. 대리점 직영주유소는 서울지역을 비롯한 대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대리점들의 판매초점이 대도시지역이어서 산하의 직영주유소 역시 주로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을 뿐더러, 주유소당 판매량도 대도시지역이 기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의 지역군별 판매비율은 서울지역과 광역시지역에서 각각 60.0%와 64.6%, 기타지역에서 76.9%로 나타났다.

한편, 주유소당 판매량 증가율은 주유소 허가기준이 완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들어 주유소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유소 판매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대 내지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군별로는 서울지역이 1993년 727kl/月에서 1995년에는 509kl/月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광역시지역은

1991년 이후부터 감소추세에 접어들어 1995년 335kl/月을 기록하였다. 기타지역의 주유소당 판매량은 1990年代 들어 월평균 270kl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다.

주유소 유형별로 월평균 판매량을 보면, 정유회사의 직영대리점 또는 자영대리점이 경영하는 직영주유소와 개인이 경영하는 자영주유소의 판매량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 직영주유소의 평균판매량에 대한 자영주유소의 평균판매량 비율은 서울지역 73.0%, 광역시지역 59.7%이며, 기타지역의 경우에는 53.4%에 불과하다.

4. 유통계열화

유통계열화란 정유회사가 자사가 생산한 석유제품의 판매에 관하여 대리점과 주유소 등 유통기관의 협력을 확보하고 자사의 판매정책이 실현되도록 유통경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유통계열화의 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정유회사가 대리점과 주유소 등 유통기관을 직접 소유·운영하는 수직통합 (vertical integration)의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대리점과 주유소 등 유통기관의 활동에 대한 조정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구성원들의 행동원칙을 반영하는 계약 (contract)의 형태가 그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정유회사가 소유·운영하는 직영유통기관은 대리점 74개중 11개, 주유소 8천 5백여 개중 9백개 내외에 불과하며, 그 이외의 모든 대리점과 주유소는 공급계약 (상표사용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정유회사는 수직통합보다는 계약을 통해 유통계열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유회사가 소유·운영하는 직영유통기관의 비율이 낮은 것은 1980년대에 발동되었던 정부의 「3.14조정명령」에 기인한다. 이 명령은 정유회사의 직영

<표 2-10> 주유소의 정유회사별 공급계약 (상표사용계약) 현황

	SK	LG	한화	쌍용	현대	합계
서울	262 (35.1)	230 (30.8)	123 (16.5)	92 (12.4)	39 (5.2)	746 (100)
부산	149	114	36	51	29	379
대구	127	112	45	73	26	383
인천	88	91	20	54	34	287
광주	62	61	21	26	16	186
대전	94	77	38	46	25	280
광역시	520 (34.3)	455 (30.0)	160 (10.6)	250 (16.5)	130 (8.6)	1,515 (100)
경기	477	357	226	135	109	1,304
강원	219	137	35	45	52	488
충북	178	129	78	69	61	515
충남	235	182	134	70	143	764
전북	252	226	23	83	57	641
전남	210	210	70	70	55	615
경북	328	183	69	129	87	796
경남	347	250	101	98	92	888
제주	42	36	-	20	-	98
기타	2,228 (37.5)	1,710 (28.0)	736 (12.0)	719 (11.8)	656 (10.7)	6,109 (100)
전국	3,070 (36.7)	2,395 (28.6)	1,019 (12.2)	1,061 (12.7)	825 (9.9)	8,370 (100)

주 : 1995년 12월 31일 기준, ()안은 구성비(%)

<자료> : 통상산업부

대리점 취득금지와 정유회사 직영대리점의 직영주유소 취득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1980년 3월 14일에서 1991년 8월말까지 지속되었다.

정유회사가 자영대리점 및 자영주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열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공급자표시제도 (상표표시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급자표시제이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그 영업장소에 특정 정유회사의 상표 또는 상호를 표시한 경우 해당 정유회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만을 판매토록 하는 제도이다.¹⁾

<표 2-10>는 1995년말 기준으로 각 지역에 소재한

1)공급자표시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준지정 고시」 (1992.1.28)가 근거가 된다. 공급자표시제도의 실시 배경 및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는 이달석,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95-01, 1995, pp41~54를 참조

주유소들이 5개 정유회사의 계열대리점과 체결한 공급 계약 (상표사용계약)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주유소의 65%는 선발 정유회사인 SK(주)와 LG칼텍스정유의 계열이며, 나머지 35%는 후발 정유회사인 한화에너지·쌍용정유·현대정유의 계열이다.

물론 공급자표시제도 하에서도 특정 정유회사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상표를 게시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정유회사와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특정 정유회사와 계열관계를 맺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는 독립계 주유소는 경기도지역에 소재한 1개 주유소에 불과하다.

제 2절 석유제품 품질관리제도

1. 주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휘발유는 옥탄값에 따라 고급휘발유와 보통휘발유로 구분되어 있으며, 옥탄값·분류성상·동판부식·산화안정도·검(gum)·황분 및 납 등의 품질항목에 대한 품질기준을 <표 2-11>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휘발유의 품질기준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산소함량에 대한 최대 허용한도를 정하고 있다. 현재 방향족화합물과 벤젠의 허용한도는 각각 50%와 5%인데, 1998년 4월부터 45%와 4%로 그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소함량은 현재의 7.5w%이 상에서 1998년 4월부터 1.0w%이상으로 강화된다.

등유는 가정주방 또는 난방용 연료로서, 요구되는 품질특성으로는 ①완전연소하기에 충분한 휘발성을 가질 것 ②취급상 안전한 정도로 인화점이 높을 것 ③발연성 성분이 적고 연소성이 좋을 것 ④부식성물질이 무해할 정도로 적고 자극성 냄새가 적을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등유는 유출온도, 인화점, 연점, 황분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표 2-11> 자동차용 휘발유의 품질규격

		1호	2호
옥 탄 값	리서취범	91이상~96미만	96이상
	모모터범	83이상~87미만	87이상
분 류 성 상	10%유출온도(°C)	70이하	
	50%유출온도(°C)	125이하	
	90%유출온도(°C)	190이하	
	증 류 점(°C)	225이하	
	잔 류 량(v%)	2.0이하	
물과 침전물(v%)		0.01이하	
동판부식(50°C, 3hr)		1이하	
증기압(37.8°C)(kg/cm ²)		0.45~0.85이하	
산화안정도(분)		480이하	
검(mg/100ml)		5.0이하	
황분(w%)		0.01이하	
색상		노란색	녹색
납(g/l)		0.013이하	
인(g/l)		0.0013이하	
방향족화합물량(v%)		50이하	
벤젠함량(v%)		5이하	
산소함량(w%)		1.0이하	

<표 2-12> 등유의 품질규격

	인화점 (°C)	95%유출 온도(°C)	유황분 (w%)	연점 (mm)	동판부식 (50°C, 3h)	색(세이 볼트)
1호	38이상	270이하	0.08	21이상	1이하	+18이상

등유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나 그 대부분은 디젤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경유가 디젤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품질특성으로는 ①엔진에 필요한 착화성을 지닐 것 ②사용온도에서 적당한 점도 및 휘발성을 유지할 것 ③유해한 고형물질과 부식성이 적을 것 ④연소생성물중 고형분이 적을 것 ⑤왁스의 석출온도와 담점이 낮아서 저온에서 펌프작동성이 좋을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경유는 세탄지수, 유출온도, 회분 및 황분, 잔류탄소, 유동점 등의 품질항목에 대한 품질기준

〈표 2-13〉 경유의 품질규격

	자동차용						보일러용	
		2호		3호		S	W	
		S	W	S	W			
인화점(°C)	40이상	40이상		40이상		40이상		
유동점(°C)	-25이하	0↓	-10↓	0↓	-10↓	0↓	-10↓	
10%잔류탄소(%)	0.15이하	0.15이하		0.15이하		0.15이하		
회분(%)	0.01이하	0.02이하		0.02이하		0.05이하		
90%분류정상 유출온도(°C)	330이하	360이하		360이하		388이하		
동점도(cSt)(37.8°C)	1.4~1.5	2.0~5.8		2.0~5.8		2.0~10.0		
황분(%)	0.2이하	0.1이하		0.1이하		0.2이하		
동판부식(100°C, 3h)	1이하	1이하		1이하		1이하		
세탄지수	45이상	45이상		45이상		45이상		
색상	-	-		-		착색		

을 정하고 있다.

중유는 디젤 기관용, 보일러용 및 각종 로의 연료로 사용된다. 중유의 종류는 A 중유(경질중유), B 중유(중유), C 중유(B-C유)로 나뉘어지고 이들은 다시 황함량에 따라 저유황중유와 고유황중유로 구분하기도 한다. 중유에서 요구되는 품질특성은 앞의 등·경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인화점, 동점도, 유동점, 찌꺼기탄소, 수분

및 침전물, 회분, 황분 등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석유사업법」의 석유제품 품질기준은 지금까지 통상산업부령, 즉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었다(「석유사업법」 제 18조의 2, ③). 그러나 1997년부터 시행될 개정된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통상산업부 장관의 고시로서 정하도록 하였다(「석유사업법」 개정안 제 24조 ②). 이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고시로 규정하는 것이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에 비해 환경기준 강화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개정된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제품의 품질규제외는 별개로 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규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즉, 휘발유·등유·경유에 대한 품질규격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시하게 하고, 공시된 품질규격을 위반한 경우 통상산업부 장관이 위반업소와 위반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석유사업법」 개정안 제 24조 ④, 제 25조 ④,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 32조, 제 3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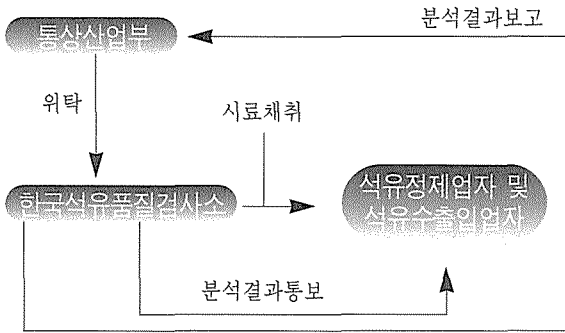
2. 석유제품 품질검사

통상산업부 장관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및 송유관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권한을 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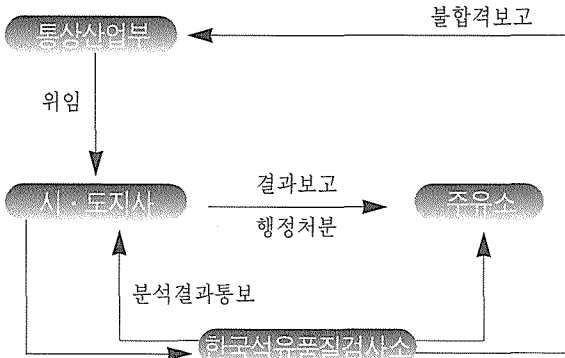
〈표 2-14〉 중유의 품질규격

	A중유			B중유			C중유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인화점(°C)	60이상	60이상	60이상	65이상	65이상	65이상	70이상	70이상	70이상
동점도(cSt)(50°C)	20이하	20이하	20이하	50이하	50이하	50이하	540이하	540이하	540이하
유동점(°C)	5이하	5이하	5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	-	-
찌꺼기탄소(w%)	8이하	8이하	8이하	12이하	12이하	12이하	-	-	-
수분과 침전물(v%)	0.5이하	0.5이하	0.5이하	0.5이하	0.5이하	0.5이하	1.0이하	1.0이하	1.0이하
회분(w%)	0.05이하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0.1이하	0.1이하	-	-	-
황분(w%)	2.0이하	1.6이하	1.0이하	3.0이하	1.6이하	1.0이하	4.0이하	1.6이하	1.0이하

<그림 2-2> 생산자단계의 품질검사 절차



<그림 2-3> 유통단계의 품질검사 절차



다. 다만 위에서 열거한 석유사업자중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석유제품 품질검사는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그림 2-2>와 <그림 2-3>은 각각 생산자단계의 품질검사 절차와 유통단계의 품질검사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품질검사 대상이 되는 석유제품은 운할유 (그리스 포함),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용제 및 아스팔트이다. 이중 운할유에 대해서는 사전검사를 실시하며, 여타 석유제품은 사후검사를 실시한다. 품질검사 회수는

<표 2-15>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적

	제품별	검사실적 (건)	불합격 (건)	불합격비율 (%)
연 료 유	휘발유	24,161	54	0.22
	등 유	3,439	6	0.17
	경 유	3,762	8	0.21
	중 유	1,102	3	0.30
	용 제	318	3	0.94
	기 타	6	-	-
	소 계	32,698	74	0.23
운 할 유	생산품	1,432	52	2.02
	수입품	1,523	64	2.33
	소 계	2,955	116	2.10
그 리 스	생산품	142	7	5.94
	수입품	1,015	66	8.05
	소 계	1,157	73	7.18
아스팔트	생산품	132	-	-
의 퇴 시 험	연료유	1,349	-	-
	운할유	976	-	-
	소 계	2,325	-	-

<자료>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정유공장과 정제업자의 저유소 및 송유관사업자의 저유소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유소에 대해서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품질검사 업무는 정기검사, 단독검사, 합동검사, 의뢰검사 등이 있다. 정기검사는 생산자단계인 정유공장과 저유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단독검사는 유통단계인 주유소에 대하여 검사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합동검사는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담당 공무원과 검사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의뢰검사는 의뢰인이 신청에 의해 제공된 시료에 대하여 시험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표 2-15>는 1995년도에 한국석유품질검사소가 실시한 품질검사 실적이다.

3. 품질검사 수수료

검사수수료를 징수하는 대상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다. 검사수수료 징수방식은 지금까지 정올제를 채택하여 왔으나, 석유가격자율화와 함께 1997년부터 정액제로 전환하도록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현행 검사수수료 징수요율을 보면, 자동차용 휘발유·등유·경유 및 중유는 국내생산품인 경우 국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공장도가격의 1천분의 0.9, 수입제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가격의 1천분의 0.9이다. 또한 윤활유, 용제, 아스팔트에 대한 검사수수료 징수요율은 1천분의 3 (그리스의 경우는 1천분의 5)이다. 그러나 개정된 「석유사업법」 검사수수료 징수요율을 보면, 자동차용 휘발유·등유·경유·중유·용제 및 아스팔트는 1리터당 0.2원 범위 안에서, 윤활유 및 그리이스는 1리터당 (그리스는 킬로그램당) 5.0원 범위안에서 통상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 37조 ②).

현재 검사수수료 산정은 전분기의 생산 및 수입실적에 징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생산 실적은 당해분기 총생산량에서 당해분기 수출량, 국제병커링, 군납량을 차감한 물량을 징수대상으로 하되, 분기중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생산실적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6-56호).

〈표 2-16〉 품질검사소 자원조달 현황

	1993	1994	1995	1996(계획)
검사수수료	5,986 (79.2)	5,939 (74.7)	7,285 (79.6)	9,791 (84.5)
에특보조금	900 (11.9)	1,356 (17.1)	992 (10.8)	900 (7.8)
기 타	675 (8.9)	652 (8.2)	875 (9.6)	895 (7.7)
합계	7,561 (100.0)	7,947 (100.0)	9,152 (100.0)	11,586 (100.0)

〈자료〉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정유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검사수수료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검사소의 재원조달은 검사수수료와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로 부터의 정보보조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사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80%내외에 이르고 있다.

제 3절 석유시장개방의 내용

1. 석유산업에 외국인투자 개방

가. 외국인투자 개방의 추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5단위)에 의한 1,195개 업종중 47개 업종을 제외한 1,148개 업종이다 (「외국인투자에 관한규정」 제 4조). 이들 외국인 투자대상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여부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만을 선정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고시하는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고시에서 지정되지 않은 업종은 외국이 투자 자유업종으로서 외국인의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외자도입법」 제 9조와 동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구체적인 업종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 고시한다. 1996년 5월 31일현재 총 12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중 56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전면 불허되고 있으며, 나머지 64개 업종에 대해서는 일정 허용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외국인 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들 제한업종의 대부분은 연차적인 외국인투자 개방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 자유업종으로 전환되거나 허용범위가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은 44개 업종만이 남게 되며, 이중에서 전면불허 업종과 부분허용 업종은 각각 18개, 업종, 26개 업종이다.

〈표 2-17〉 외국인직접투자 개방현황

분 류	총업종수	현행 제한업종			2000년 후 에도 제한
		전면불허	부분허용	합계	
농·어·광업	68	14	6	20	4(3)
제조업	585	4	17	21	5(1)
서비스업	495	38	41	79	35(14)
총 계	1,148	56	64	120	44(18)

주 : ()안은 전면불허 업종

나. 석유정제업 개방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에는 외자도입법 외의 다른 개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석유정제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이스 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분획물 재처리업이 「석유사업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즉, 이들 3개 업종은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 투자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²⁾

당초 정부는 이들 3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전면 개방시기를 1999년 1월로 계획하였으나, 1996년 5월의 외국인 투자 개방확대 조치에 따라 윤활유 및 그리이스 제조업, 기타 석유정제분획물 재처리업에 대해서는 1997년 1월로 개방시기를 앞당기게 되었다. 원유정제처리업의 경우는 1997년의 유가 및 수출입자율화에 따른 국내 정유산업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전 계획대로 일정 유예기간 후인 1999년 1월에 개방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정제처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상황은 Caltex사가 LG칼텍스정유와 50:50으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Aramoc사가 쌍용정유에 3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 석유유통업 개방

도·소매업 부분의 총 121개 (도매업 70개, 소매업 51

개) 업종중 현재 주유소운영업을 비롯하여 11개 업종에서 외국인투자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중 7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도·소매업 부분의 외국인투자 개방계획은 1997년에 9개 업종이 전면 개방되고 1999년에 주유소운영업이 개방됨으로써, 2000년 이후에도 개방이 유보되는 업종은 고가도매업만 남게 된다. 이처럼 주유소운영업은 도·소매업부분에서 개방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은 업종에 해당한다. 한편 석유제품수입업을 포함하는 산업용중간재 및 재생재료 무역업은 현재 외국인투자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인데, 1997년에 전면 개방된다.

도·소매업 부분의 석유관련 업종으로는 주유소운영업(주유소)이외에도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석유대리점), 석유소매업(석유판매소), 가스충전업(LPG충전소), 가스소매업(LPG판매소)이 있는데, 이들 업종은 모두 개방된 상태이다.

정부는 이미 1984년 7월에 시행된 유통시장 개방에서도 도·소매업중 28개(도매업 15, 소매업 13)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개방하였다. 석유대리점은 원칙적으로 이때부터 외국인투자가 허용되었다. 다른 업종은 1993년 12월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개방일정이 확정되었다. 석유판매소와 LPG판매소는 1995년 1월에 개방되었으며, LPG충전소는 1996년 1월에 개방되었다.

석유유통업중 주유소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모두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외국인투자 실적은 없다. 사실 석유제품수입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고 석유제품유통의 최종판매창구인 주유소가 개방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금까지 여타 석유유통업에 대한 개방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더욱이 석유 및 LPG판매소의 개방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이들 업종이 영세한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경유하여 판매되는 석유제품의 비율이 크지

2) 윤활유 및 그리이스 제조업은 1일 생산능력이 2,000배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한을 적용하며, 기타 석유정제분획물 재처리업중 석유왁스 제조업과 1일 생산능력이 2,000배럴 이하인 아스팔트 제조업은 제외된다.

않아서, 외국의 석유기업이 진출해 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2. 석유제품 수출입자유화

가. 기존의 석유제품 수출입제도

기존에는 석유의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매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매년도의 석유수출입 계획을 신고하도록 하였다(「석유사업법」 제 11조 ①, ③). 또한 석유의 수입계약, 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석유사업법」 제 16조 ①).

석유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로는 전년도 수입량(전년도 수입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수입계획량)의 45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했다(「석유사업법 시행령 제 8조의 2). 그리고 석유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량의 30일분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량을 비축하여야 했다(「석유사업법」 시행령 제 11조의 3).

또한 휘발유·등유·경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석유제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휘발유 개질시설, 등유 및 경유, 수소첨가 탈황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석유사업법」 제 11조 ②, 동법시행령 제 8조의 2).


이와 같은 수출입제도의 운용으로 인해 석유제품 수입업체는 사실상 정유회사로 국한되었으며, 정유회사 이외에는 LPG수입업체와 일부 대량수요처가 있을 뿐이었다. 대량 수요처가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로는 석유화학업체들의 나프타 수입과 한국전력의 B-C유 수입이 있었다.

나. 석유제품 수출입자유화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공포된 「석유사업법」에 의하면, 석유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그 수출입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석유수출입업 등록제로 변경하였다(「석유사업법」 개정안 제 8조).³⁾ 또한 석유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출입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한편,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석유수입업의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품질보증시설에 대한 의무조항이 삭제되었다. 석유수입업자의 저장시설설치의 무 및 비축의무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다소 달라졌다.

석유수입업자는 전년도 내수판매량(전년도 내수판매 실적 없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 11조 ①). 예외적으로 LPG수입업자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석유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수입량의 3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 11조 ②,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 12조).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 석유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 석유 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량의 60일분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량을 비축하여야 한다(「석유사업법」 개정안 제 17조 ①,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 21조 ①).

이에 따라 개정된 「석유사업법」이 시행되는 1997년 1월부터는 비축시설 및 비축의무와 품질규격 준수 의무를 이행하면 누구나 석유제품을 수입·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계속> 

3)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전년도에 수입한 석유의 양(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는 당해년도 석유수입계획량)이 10만Kℓ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다(「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 ②)